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오승철 의원

제출일 : 2026. 3.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신청의 심사 순위가 상대적으로 뒤에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 신청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우선 허가 기준을 조문으로 구체화한 규정이 미비함.
- 나. 따라서 “장애인”, “장애인체육동호회” 및 “장애인단체”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용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, 사용허가 경합 시 장애인 관련 행사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장애인 간 경합 시 우선 허가 기준을 특례로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정의 규정에 “장애인”, “장애인체육동호회” 및 “장애인단체”를 신설(안 제3조제13호 및 제14호)
- 나.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조정(안 제6조제3항)
- 다.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,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규정과 사용 허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특히, “장애인”, “장애인체육동호회” 및 “장애인단체”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, 비장애인이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순위 상향 없이 기존 우선순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, 장애인 사용허가 특례 조항에서도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운영상 균형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